

 AJ네트웍스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규정구분	전사규정
		개정일	2021.05.11.
		규정번호	01-00-05-0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AJ네트웍스(주)의 내부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직무와 권한】

1. 위원회는 회사와 회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이하 "내부거래"라 한다)를 심사 및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
2.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성과 및 내부거래위원회 규정(이하 "본 규정"이라 한다)의 내용을 매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본 규정의 개정을 이사회에 건의한다.
3.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의 주요내용, 계약방식 및 거래 상대방의 선정기준, 세부거래 조건 등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2장 구성

제4조 【구성】

1.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2.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3.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4. 위원이 임기의 만료·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 잔여 사외이사가 있을 경우 이사회에서 이를 선임하고, 잔여 사외이사가 없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를 통해 그 구성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제2항에 의한 구성을 결한 경우 임기의 만료·사임 등으로 퇴임한 위원은 새로 선임된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위원임에 따른 권리·의무가 있다

제5조 【위원장】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선임한다. 단, 초대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시 의장이 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4. 위원장의 유고 또는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제5조 제4항은 위원장의 임기에 준용한다.

제3장 회의

제6조 【개최】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 【소집권자】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 등의 경우에는 제5조 제4항과 같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소집절차】

1.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을 정하고 3일 전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

제9조 【의안제출】

1. 위원회 상정 의안과 그 제안 이유는 각 해당부서에서 작성하여 회의일 3일전까지 위원회 지원조직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위원회 지원조직은 전항 접수 의안의 문안 검토(이하 "사전심의" 라 한다)를 거쳐 이를 위원회에 부의한다.

제10조 【결의방법】

1.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위원회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1조 【부의사항】

위원회에서 심의 및 시정 건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사의 "이해관계자 및 내부거래 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회사가 진행하고자 하는 내부거래 계약 건의 부당지원 여부에 대한 심의
2. 5억원 이상의 일반거래 및 5억원에서 45억원 미만의 자금거래

구 분	5억미만	5~45억미만	45억이상
일반거래	대표이사	내부거래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자금거래	대표이사	내부거래위원회	이사회 (대규모자금거래)

3. 기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일체 사항

제12조 【관계인의 출석】

1.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13 조 【의사록】

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14 조 【보고】

위원회는 심의 내용 및 그 결과를 종합하여, 매 분기 이사회에 보고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 【지원조직의 구성 및 역할】

1.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는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2. 제 1 항에 따라 위원회를 보조하는 지원조직은 경영기획실 경영관리팀으로 한다.

3. 위원회 지원조직은 위원회에 부의하기 전, 실제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안건에 대해 사전심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사전 심의를 통해 내부거래의 부당 지원성 판단이 명백한 경우 심의 요청부서에 내부거래 진행 가부에 대한 판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지원조직은 사전심의를 통해 판단이 불가하거나, 사전심의 결과에 대한 심의 요청부서의 이의가 제기될 경우,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본 심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5. 위원회 지원조직은 회사의 "이해관계자 및 내부거래 규정" 제 10 조 제 2 항에 따라,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100 분의 1 또는 동일 상대방에 대해 연간 거래 총액 기준으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100 분의 5 이상인 자금거래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을 심의 요청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6. 지원조직은 사전 심의를 통해 진행한 건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월 1 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재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5월 1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